

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하 남 시
【 복 지 정 책 과 】

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3. 2. .

제출자 : 하남시장

1. 개정이유

- 예측불가능한 국제유가 상승등으로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지원을 위한 긴급 지원대책에 대한 제도적 기반 필요하여 한시적 조례 개정

2. 주요내용

- 한시적 난방비 지원에 관한 조항(제7조의2) 신설

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
5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6. 예산수반 사항 : 덧붙임(비용추계서)

7. 입법예고 결과

가. 예고기간 : 2023. 2. 4. ~ 2023. 2. 7.(4일간)

나. 의견내용 : 의견 없음

8. 부서협의 결과

가. 규제개혁 관련협의 : 해당없음

나. 성별영향 분석평가 : 의견없음

다. 부패영향 분석평가 : 의견없음

9.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10. 관련부서 :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

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한시적 난방비 지원)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한시적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제7조의2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

부서명		복지정책과
입안자	부서장 직위 · 성명	복지정책과장 박종현
	팀장 직위 · 성명	복지기획팀장 지종수
	담당자 성명 · 전화번호	김보라 (031-790-5723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< 신설 ></u>	<u>제7조의2(한시적 난방비 지원)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한시적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u>

비 용 추 계 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

-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2

나. 비용 발생 요인(안)

- 국가유공자 가구당 20만원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(안)

- 국가유공자 가구당 20만원×4,000가구×1회 = 800,000천원

나. 추계결과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	2023년	년	년	년	년
총 소요액		800				
난방취약계층 긴급지원	국가유공자	800				

다. 재원조달방안 : 예비비

3.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: 해당없음

4. 작성자 :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장 박 종 현

〈 연도별 비용 추계표 〉

(단위: 천원)

구 분		1차연도	2차연도	3차연도	4차연도	5차연도	계
세 입							
세 출		800,000					800,000
국가유공자		800,000					800,000
재원 조달							
의존 재원	소 계						
	보조금						
	지방교부세						
자체 수입	소 계	800,000					800,000
	지방세	400,000					400,000
	세외수입	400,000					400,000
지방채							
기 금							
공기업 특별회계							
기 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		

□ 국가보훈 기본법

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,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·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(財源)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